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는 사법에 대한 언론보도와 여론의 관심,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판사 신상정보 유포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사법권 독립의 의미, 법원의 재판과 여론, 사법의 민주화 등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사법부의 역할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등 헌법적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적 판단의 내용,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국민 일반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주권의 원리 및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할 때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언론과 여론의 관심·비판이 재판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의 물리적 위협으로 형성된다면” 이는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고 당연히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요청되며, 그러한 위협이 실천에 옮겨진 경우에는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진다. 이 또한 원칙적으로 그것이 사법부의 작용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별다른 내용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관 일반의 경우는 물론 사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위

협이 있거나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하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혹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의 현실적 사정은 사법부 독립을 운위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헌법질서의 붕괴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 단계에 다가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판결을 내린 개별 법관에 대한 보도”에 대해 사법부가 “강하게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호응을 결여한 사법 판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신뢰받지 못한 사법은 언제든지 교체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점과 “사법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서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문제가 되는 판결을 행한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신상과 과거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포하고 논쟁의 소재로 삼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결 너그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름 없는’ 법관만이 재판 외적 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재판 담당자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고 어떠한 인생 경로를 겪었는지 알고자 하면 신상털기의 오명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직무와 관련된 법관의 과거 행적과 판결 성향을 알고 현재의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것”을 “현재의 재판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의 부당한 접근”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언론 보도와 법관에 대한 시민적 비판 속에 사법권 독립 훼손의 징후”나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려는 국민적 의도가 발견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폐쇄성과 재판의 수준에 대한 우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당한 비판과 합리적 논의를 차단하는 외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대한 비판은 나름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법적 판단이 국민적 호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법원이 주장하는 바와 여론과의 괴리에 대해 법원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사법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문제는 많은 섬세한 논의를 요구하는 심각한 주제라고 판단한다.

재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회변동을 가로막는 보수적 사법판결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원이 사회 변동을 그대로 수용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것 또한 자명하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유포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다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매우 역동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사법부도 그러한 원리에 입각한 국가 정치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근대입헌주의 헌법 이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구현된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실제 분쟁과 사건 속에서 수호하고 구현해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 기대되는 기관이다. 재판의 결과와 그 이유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앞서 언급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인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언론보도와 여론의 형성, 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중 반응의 추이 같은 것들은 매우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적 상황이다.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제도를 구상할 때는

그러한 현실적인 변화 속에서 헌법의 기본가치를 보장해내기 위한 최선의 장치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온 것이다. 그렇게 형성되어온 것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같은 원칙, 제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관념들이다.

이러한 이상이 실제로 잘 구현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기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찰할 때 사법의 본질과 국민의 의사의 의의에 대해 함께 숙려하는 것이 논의를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